TREENUS

동천역 트리너스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www.treenus.co.kr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동천역 트리너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www.treenus.co.kr)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안내 및 예약 예정)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자세한 서류제출 사항은 동천역 트리너스 고객센터(031-711-0945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천역 트리너스 고객센터(031-711-094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04(화)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수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수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4)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0.10.04.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용인시 수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2020.10.04.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기준,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기준,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기준,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하여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본인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각각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5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 홈페이지(www.treenus.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용인시 수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5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함)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정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용인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2020.10.04.**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해당지역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타지역 (용인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 거주자)				
일 정	2022.10. 14 (금)	2022.10.17 (월)	2022.10.18 (화)	2022.10.19 (수)	2022.10.25 (화)	2022.10.27(목) ~ 2022.11.04(금)	2022.11.07 (월)~2022.11.09 (수)
방 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10:00 ~ 16:3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1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코로나19 인하여 영업점별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청약 전 접수가능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용인시청 주택과 – 16421호(2022.9.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77-2번지 외 5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최고 13층, 2개동, 총 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3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2000637	01	039.3760	39	39.3760	12.0008	51.3768	3.3403	34.8957	89.6128	24.4934	11	1	1	2	0	1	5	6	2
		02	047.6768	47	47.6768	14.1450	61.8218	4.0445	42.2520	108.1183	29.5514	13	1	1	3	0	1	6	7	2
		03	064.1439	64	64.1439	18.1539	82.2978	5.4415	56.8454	144.5847	39.5186	13	1	1	3	0	1	6	7	2
		04	070.0856	70	70.0856	19.0823	89.1679	5.9454	62.1111	157.2244	42.9733	30	3	3	6	1	3	16	14	2
		05	081.8998	81	81.8998	22.7372	104.6370	6.9477	72.5810	184.1657	50.3370	21	0	0	0	0	0	0	21	1
		06	097.6808	97	97.6808	29.0725	126.7533	8.2865	86.5664	221.6062	60.5704	2	0	0	0	0	0	0	2	0
		07	102.9706	102	102.9706	29.0757	132.0463	8.7352	91.2543	232.0358	63.4211	4	0	0	0	0	0	0	4	0
		합 계										94	6	6	14	1	6	33	61	9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전용면적)	동별(라인별)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3.01.15	2회(10%) 23.04.15	3회(10%) 23.07.15	4회(10%) 23.10.15	5회(10%) 24.01.15	입주지정일
39	101동 3호	7	2~3층	2	157,000,000	317,000,000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89,600,000
			4층	1	157,000,000	327,000,000		484,0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93,600,000
			5층	1	157,000,000	337,000,000		494,0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97,600,000
			6~8층	3	157,000,000	348,000,000		505,0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202,000,000
	102동 5호	4	1층	1	157,000,000	297,000,000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81,600,000
			2층	1	157,000,000	307,000,000		464,0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85,600,000
			3층	1	157,000,000	317,000,000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89,600,000
			4층	1	157,000,000	327,000,000		484,0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93,600,000
47	101동 4호	8	2층	1	189,000,000	365,500,000		554,50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221,800,000
			3층	1	189,000,000	367,500,000		556,50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222,600,000
			4층	1	189,000,000	379,500,000		568,50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227,400,000
			5층	1	189,000,000	391,500,000		580,50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232,200,000
			6~9층	4	189,000,000	403,500,000		592,50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237,000,000
	102동 6호	5	1층	1	189,000,000	343,500,000		532,50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213,000,000
			2층	1	189,000,000	355,500,000		544,50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217,800,000
			3층	1	189,000,000	367,500,000		556,50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222,600,000
			4층	1	189,000,000	379,500,000		568,50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56,850,000	227,400,000
			5층	1	189,000,000	391,500,000		580,50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232,200,000
64	101동 2호	13	2층	1	253,000,000	468,000,000		721,0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88,400,000
			3층	1	253,000,000	484,000,000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294,800,000
			4층	1	253,000,000	500,000,000		753,0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301,200,000
			5층	1	253,000,000	516,000,000		769,0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307,600,000
			6~9층	4	253,000,000	532,000,000		785,0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314,000,000
	102동 4호		1층	1	253,000,000	452,000,000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282,000,000
			2층	1	253,000,000	468,000,000		721,0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88,400,000
			3층	1	253,000,000	484,000,000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294,800,000
			4층	1	253,000,000	500,000,000		753,0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301,200,000
			5층	1	253,000,000	516,000,000		769,0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307,600,000
70	101동 2호	2	10층	1	275,000,000	612,000,000		887,0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354,800,000
			11층	1	275,000,000	598,000,000		873,0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349,200,000
	102동 2,3호	28	1층	2	275,000,000	510,000,000		785,0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314,000,000
			2층	2	275,000,000	528,000,000		803,0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321,200,000
			3층	2	275,000,000	545,000,000		820,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328,000,000
			4층	2	275,000,000	563,000,000		838,0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335,200,000
			5층	2	275,000,000	580,000,000		855,0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342,000,000
			6층	2	275,000,000	598,000,000		873,0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349,200,000
	102동 4호		6층	1	275,000,000	612,000,000		887,0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354,800,000
	102동 2,3,4호		7층~11층	15	275,000,000	598,000,000		873,0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349,200,000
81	101동 1호	10	2층	1	323,000,000	617,200,000		940,20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376,080,000
			3층	1	323,000,000	638,200,000		961,20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384,480,000
			4층	1	323,000,000	658,200,000		981,20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392,480,000
			5층	1	323,000,000	679,200,000		1,002,20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400,880,000
			6~11층	6	323,000,000	700,200,000		1,023,20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409,280,000
	102동 1호	11	1층	1	323,000,000	597,200,000		920,20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368,080,000
			2층	1	323,000,000	617,200,000		940,20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376,080,000
			3층	1	323,000,000	638,200,000		961,20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96,120,000	384,480,000
			4층	1	323,000,000	658,200,000		981,20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98,120,000	392,480,000
			5층	1	323,000,000	679,200,000		1,002,20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100,220,000	400,880,000
			6~11층	6	323,000,000	700,200,000		1,023,20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409,280,000
97	101동 1호	1	12층	1	388,000,000	1,014,545,455	101,454,545	1,504,0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601,600,000
	102동 1호	1	12층	1	388,000,000	1,014,545,455	101,454,545	1,504,0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601,600,000
102	101동 2호	1	12층	1	407,000,000	1,075,454,545	107,545,455	1,590,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636,000,000
	102동 2,3,4호	3	12층	3	407,000,000	1,075,454,545	107,545,455	1,590,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636,00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5째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코어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엘에스개발㈜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엘에스개발㈜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수탁자 모든 행위 및 권리의무는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엘에스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③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엘에스개발㈜와 시공사인 서광종합개발㈜에게 있다. ④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 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⑥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⑦ 본 조의 각 조항은 본 계약서 모든 조항에 우선한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공급계약 또는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및 교환 등만 해당.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 시행위탁자 현황**

구분	시행수탁자(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광종합개발(주)	에스엘에스개발(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0, 4층 402호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10111-0164163	110111-7890802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주된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대치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82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본 건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2022-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22.01.26.) 승인완료)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권역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treenus.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106번지
- **분양문의** : 031-711-0945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아파트에 새로움을 담다

동천역 트리너스

| 총 94세대 39㎡ ~ 102㎡ |

모델하우스 오픈중

분양문의 031) 711-0945

시행사 : **에스엘에스개발(주)** 시공사 : **서광종합개발(주)** 신탁사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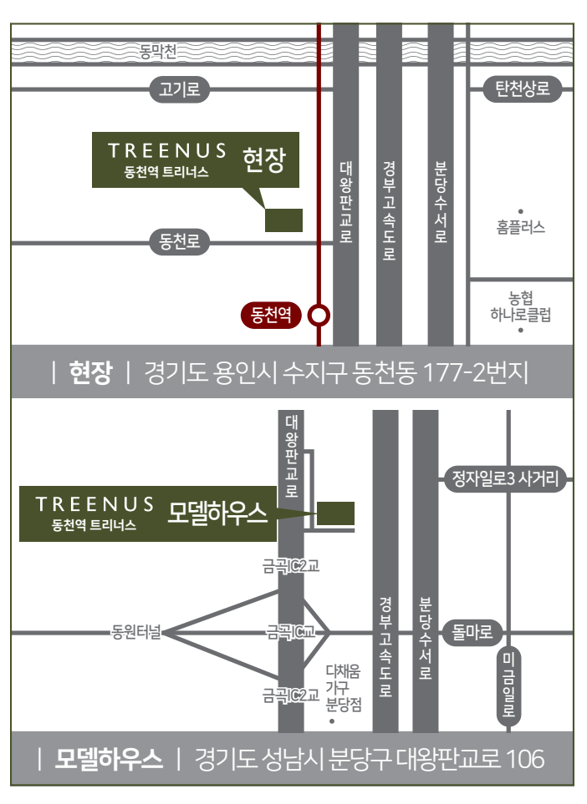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77-2번지

| 모델하우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06